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군 인 징 계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 징계별목 중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안 제12조 개정)

- 1)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하고 사유를 확대함
- 2)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병 징계별목 변경에 따라 법령 정비(안 제18조 개정 및 제22제2항 · 제24조단서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군기교육시설 관련 예산 필요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8. ~ 3.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이”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59조의2제2항”을 “법 제59조의2제3항”으로, “병의 인권을”을 “인권보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 8. 5.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창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22조 및 제2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제다목 중 “영창”을 각각 “군기교육”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제라목 중 “영창”을 각각 “군기교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징계위원회의 위원이 -----</u> <u>-----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	1. <u>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 <u>우</u>
2. · 3. (생략) <u><신 설></u>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u><신 설></u>	4. <u>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u>
제18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u>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병의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u>	제18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 <u>법 제59조의2제3항----- 인권보호를 -</u> ----- ----- ----- -----

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훈련 중인 함정(艦艇)에 승선한 경우

2.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⑥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 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서면과 징계처분서 및 징계의결서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① ~ ③ (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
항-----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⑤ (생 략)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① (생 략) ②징계권자는 부대나 함정의 <u>영창, 그 밖에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영창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收容)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u>다만, 영창의 경우에는 감금일부터 기산한다.</u>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 ----- -----. <u><단서 삭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 락 처	(02) 748 - 6818